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6384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6. 1. 28.

제출자 : 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각각 90일 및 60일로 정하고,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, 그 외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르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2조(이의신청)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(협의회
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
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
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협의회를 심의를
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
통지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
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
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다.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)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·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~ 4. (생략) 5.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<u>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</u> 6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제6조(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제32조제1항에 따른 <u>이의신청에 관한 사항</u>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2조(이의신청)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<u>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<u>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</u>	제32조(이의신청)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 <u>(협의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한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</u>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

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
경우 미리 협의회를 심의를 거
쳐야 한다.

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
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
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이의
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
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
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
항은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
따른다.